

2006년 농림부 축산정책 추진계획

농림부 축산국

지난 2월 24일(금) 농림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농림부 축산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. 이에 설명회 자료의 전체 11항목으로 분류된 축산정책 추진계획 중 수의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“축산물 안전성 확보”와 “가축공제사업활성화”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소개합니다.

- 아 래 -

1. 축산정책 여건

- 전업화, 규모화 등이 진전되고 개방화 체제에 상당히 적응하였다는 점은 강점
 - 축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 추세,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지출 증대 등은 축산업 발전의 기회요인
 - 1인당 육류 소비량 : (’90) 19.9kg → (’04) 31.3 → (’13년 P) 39.2
- 시장개방 확대, 특정지역 가축 집단 사육, 가축질병 지속 발생 및 수급 불안 반복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
 - DDA, FTA 등 시장개방 확대는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
 - 특히, 캐나다·미국 등 축산 선진국과 FTA 체결은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
 - ’03.12월 광우병(BSE) 발생 이후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시 국내 한우산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
 -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가축분뇨를 적절히 관리·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
 -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
 - 동남아, 중국 등 방역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와 교역 증대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악성가축 질병 유입 우려
 - 수급불안에 생산자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 미흡

2. 축산물 안전성 확보

❖ 현황 및 문제점

- '04.7월 「축산물 위생·안전성 제고대책」을 수립, 사육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축산물 관리체계의 기본 틀 마련
 - 사육단계 :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항목(123종) 및 사료내 유해물질(78종) 기준 설정, 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약품 수 감축(53종→25종)
 - 도축·가공단계 :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 확대
 - '03.7.1부터 소·돼지·닭 도축장(162개소)에 HACCP 의무 적용
 - ※ HACCP 적용이후 도체중의 일반세균수가 105-6 에서 102-3 수준으로 개선
 - 가공장은 자율적용 : '05.12월 현재 264개소가 HACCP 운용
 - 유통단계 : 냉장 유통체계 정착 및 수거검사 실시
 - 수입축산물가공품 위생검사실시 (전체 수입건수의 16% : 연간 2,000건)

- 전반적인 위생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
 - 사육단계에서 항생제 등 과다 사용, 휴약기간 미준수 등 사례
 - '04년의 경우 120천건 조사에서 위반 290건 발생(위반율 0.25%)
 - ※ 잔류위반율 : (미국) 0.73%, (영국) 0.24%, (일본) 0.05%, (호주) 0.21%
 - HACCP 적용으로 도축장·가공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었으나, 보관·운반·판매단계의 위생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
 - 유통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미흡하여 재오염 사례가 다수 발생

❖ '06년 추진계획

- 사육단계 : 농가 교육 및 사료·동물약품 관리 강화
 -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사육단계에 HACCP 적용 점진적 확대
 - '06년 돼지사육단계(브랜드참여농가, 친환경 축산농가 등)에 HACCP 시범적용(10개소)
 - HACCP 적용 희망 농가에 컨설팅 실시('06예산 : 225백만원)
 - 젖소('06년 시행)·한우('07년) 등 HACCP지침 및 적용 메뉴얼 개발

- 농가의 동물약품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
 - 상반기(5월) 및 하반기(10월)에 5개 권역별 순회 교육 실시
 -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, 감수성 약제사용 등 홍보물 배포
 - 생산자단체, 동물약품업체 등이 참여하는 '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(78명)' 운영 활성화(분기별 1회 모임)
 - 항생제 등 잔류 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
 - 위반농가 명단 공개, 규제검사 기간 연장, 과태료(100만원) 부과 철저
 -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(05.11.8) 및 운영
 - 사료공장 HACCP적용 확대 : (05년) 24개소 → (06년) 40개소
 - 사료내 중금속, 살모넬라균,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
 -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사료원료구매자금 우선 지원, 연간 사료검사 면제, 시설 개·보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
- 도축·가공단계 : 미생물 등 검사 강화 및 HACCP 적용 확대
- 도축장 HACCP 운용 내실화 추진
 - HACCP 적용 도축장에 대한 실제 운용 여부 등 점검
 - 시·도별 자체 점검 또는 시·도간 교차 점검 (6월)
 - 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는 최소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
 -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평가('06.5~11월간 평가, 12월중 발표)
 - 평가 후 등급을 부여, 정책자금 차등 지원(상위권 금리 0%, 중위권 3%, 하위권 자금지원 배제, '06예산 637억원)
 - 축산물 가공장 HACCP 적용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
 - HACCP지정 가공장 : (05년) 264개소 → (06년) 300개소
 - 군납, 집단급식 등에 HACCP제품 우선 사용 협조 요청(연 2회)
 - HACCP적용 가공장에 원료육 구매자금 등 우선지원('06예산 : 500억원)
 - 정부 미지정 축산물가공장 HACCP 명칭 사용금지 제도 단속 강화
 -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강화
 - 잔류물질 규제검사 물량 확대(10천건→13천건), 대상물질 확대(80종→83)
 - 오리, 양(산양포함) 전문 도축장에 대해 살모넬라균 검사 추가
 - 광우병 대책과 연계, 도축검사 내실화를 위해 도축검사관, 검사보조원 배치 (130명) 및 교육 강화

○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 강화

- 계란, 오리알의 미생물·잔류물질·부패·변질란 검사(06년 :1,710건)

□ 유통단계 : HACCP 도입 및 위생감시 강화

○ 판매장 HACCP적용 모델 개발·보급 및 지정 확대

- 식육판매장 유형별 적용모델 개발(연구용역 중) 및 보급
- 리후렛 등을 통한 홍보 및 HACCP 운용 준비업체 컨설팅 지원
- HACCP 지정 확대 : (05년) 2개소 → (06년) 8개소

○ 보관·운반단계 HACCP적용을 위한 지침 제정(11월말) 및 보급

- 외국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침제정(연구용역)
- 지침 제정 내용의 HACCP 적용 업체 교육 실시

○ 재래시장 등 축산물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(수거검사 물량을 상향 조정)

○ 닭·오리고기 지육·정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 추진

- 1일 도축두수 8만수 이상은 '07년부터, 8만수 미만은 '08년부터 시행
- 연말까지 표시기준, 포장단위·방법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업체 교육·홍보 등 현장 사전준비 시행

○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

- 관계부처와 협조, 내년 1월 시행(영업장 면적 300㎡ 이상 규모)에 차질 없도록 입법 추진
- '06년에는 농협·생산자단체와 협의,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자율 적용 확산 추진

○ 사육단계부터 최종판매단계까지 전단계 HACCP도입에 따른 관리기구 설립 추진(가칭 사단법인 한국축산물HACCP기준원)

3. 가축공제사업 활성화

현황 및 문제점

□ 재해와 사고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축공제사업 지원

○ 공제가입두수 : ('04) 28,404천두 → ('05) 45,845

- 가입률(가입두수/사육두수) : ('04) 24.1% → ('05) 33.3

○ 공제금 지급액 : ('04) 199억원 → ('05) 185

〈가축공제 지원 개요〉

- 대상축종 : 소, 돼지, 말, 가금(닭, 오리, 꿩, 메추리)
- 공제료 부담률 : 농가부담 50%, 보조지원 50%
- 공제금 지급 보장 :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에 의한 폐사, 부상 등의 손해에 대해 시가의 80%~100% 보상

□ 가입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, 축종별 가입률 편차가 큼

○ 가입률 : 소(7.4%), 돼지(57.6%), 가금(32.8%), 말(4.9%)

□ 가금에 대하여는 설해 피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'05년말 폭설 피해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

□ 풍수해보험법(소방방재청)이 제정되었으나, 아직 준비 단계로 축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

○ 축사는 특약으로 운영되며, 공제료 전액을 농가가 부담

□ 농협만 가축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제사업의 경쟁체계 미흡

❖ '06년 추진계획

□ 가축공제가 농가경영안정의 주된 장치로 정착되도록 주요 가축의 가입률 50% 이상 달성을 목표로 활성화 추진

○ 장기적으로 대상 축종을 7개 축종에서 '10년까지 15개 축종으로 확대하고, 가입률도 연차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


- '06년도에 사슴, 칠면조를 추가(총 9개 축종)

○ '06년도 목표 : 가입률 37%, 가입 금액 1조 7,472억원

- 축종별 가입률 : 소 11.6%, 돼지 70.7%, 말 6.1%, 가금(닭·오리·꿩·메추리) 35.9%

□ 가축공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(3~4월)·추진

○ 현행 가금류 공제 보장 범위(풍수재, 화재)에 설해 추가

- 축사시설의 설해 피해 보장 및 공제로 보조 방안 검토
 - ※ 현재 축사는 특약으로 소, 돼지, 말에 대해 화재, 풍재, 수재에 의한 손해만 보상
- 가축공제사업에 농협중앙회 외에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공제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추진
- 타 유사보험(농작물재해보험, 풍수해 보험)과의 통합문제, 가축공제 요율의 적정성, 국가 재보험 필요성 등 검토
- 부가서비스 확대 및 사고율 저하를 위한 무료가축 진료 추진 등
 - 축사 전기 안전 무료 점검 서비스 및 가축 무료 검진사업 확대로 재해에 대한 사전 대응력 강화
- 안내장 배포(20만부), 재해피해 농가 보상사례 홍보 등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대대적인 가축공제 가입확대 독려 

참고 : 공제금지급 수준

구 분	보장범위 (보상하는 사고)	보장내용 (공제금 지급)	가입대상
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(풍해·수해·설해등 자연재해, 화재)등으로 인한 폐사 ○ 부상(사지골절, 경추골절, 탈골), 난산, 산욕마비,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	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80%까지 보상	송아지:생후2개월 이상 한육우:12개월~13세미만 젖소:8세미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○ 부상,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○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	가입금액의 80%까지 보상	정액생산용 수소
구 분	보장범위 (보상하는 사고)	보장내용 (공제금 지급)	비 고
돼지	○ 질병(TGE, PED, Rota)에 의한손해	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80%까지 보상	제한없음
	○ 설해, 화재, 풍재, 수재에 의한 손해	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%까지 보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휴지손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종재해 피해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	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100% 보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기적 장치 위험담보특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	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%까지 보상	
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○ 부상, 난산, 산욕마비,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○ 불입으로 판정된 경우 	가입금액의 80%까지 보상	중빈, 종모마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재, 풍재, 수재에 의한손해 	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%까지 보상	
가금 (닭·오리·꿩·메추리)	○ 전기적 장치 위험담보특약 -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	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%까지 보상	제한없음
	○ 화재, 풍재, 수재에 의한 손해 ※ 축사는 특약으로 정부지원금 없음	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의 100%까지 보상	